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성숙 (재정경제부 등 10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년 등 경제활동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2차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자격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자격시험 관련 각종 공고의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화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청년 등 경제활동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관보에 게재하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로 한다.

제2조(「경비업법 시행령」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보게재와 각 시·도경찰청”을 “각 시·도 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를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을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5조(「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한다.

제6조(「관세사법 시행령」의 개정)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를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을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1회”를 “해당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8조(「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 중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을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9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4제5항 중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를 “해당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1차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10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제11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를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을 “시험일”로, “10일”를 “19일 전부터 10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2조(「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를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을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를 “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7조의7제4항제3호 중 “철회”를 “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철회”를 “취소”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4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5조(「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를 “해당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1차시험 1회를 면제

한다.

제16조(「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를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수사등의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17조(「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간신문·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된 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9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6조 및 제12조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

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실시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변리사법 시행령」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방기본법 시행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 (생략)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 ----- ----- 인터넷 홈페이지 ----- ----- ----- -----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 -----
⑨ 삭제	
⑩·⑪ (생략)	⑩·⑪ (현행과 같음)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 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u>관보게재와 각 시·도경찰청</u> 게 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각 시·도 경찰청</u> ----- -----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응시 수수료) ① ~ ③ (생략)	제5조(응시 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응시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돌려주어야 한다.	④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응시원서 접수기간에</u>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전부	3. <u>시험 시행 20일 전까지</u> ----- -----
4. <u>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u>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4. <u>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u> ----- ----- ----- -----
5. <u>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u>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자가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삭 제>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생략)	제10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과목 · 일시 · 장소 ·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또는 <u>일간신문 중의 어느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u> 한다.	② ----- ----- -----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③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험 시행일의 10일 전까지	4. -----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u>100분의 50</u> 5. ~ 7. (생략) ④ (생략)	----- ----- <u>100분의 60</u> 5.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대비표

– 16 –

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응시절차) ①·② (생략)	제11조(응시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 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응시원서 접수기간에</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 액	3. <u>시험 시행 20일 전까지</u> ---- ----- --
4. <u>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 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 까지</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 당하는 금액	4. <u>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u> ----- ----- ----- -----
5. <u>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u> 접수를 취 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 ⑤ (생략) ⑥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실시되는 자격 검정의 해당 시험을 <u>1회</u> 면제한 다. <단서 신설>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해당 필기 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을 합격 한 날부터 2년 동안 ---. 다만, <u>해당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 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검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 구술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 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구술시험 1회를 면제한다.</u>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 ⑥ (생략) ⑦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u>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u>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u> ----- -----. <u>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u>
⑧ · ⑨ (생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 ④ (생략) ⑤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u>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u> <단서 신설>	제40조의4(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해당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u> ----- ----- <u>. 다만, 해당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1차시험 1회를 면제한다.</u>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내용·일시·장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u>주요 일간신문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u> 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① ----- ----- ----- ----- ---- <u>인터넷 홈페이지 등</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 ② (생략)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u>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u> 에 공고한다.	③ ----- ----- ----- <u>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② (생략)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③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응시원서 접수기간에</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u>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 20일 전까지</u> ----- --
4. <u>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 10일 전까지</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u>100분의 50</u>	4. <u>시험일</u> ----- ----- ----- ----- <u>19일 전부터 10일</u> ----- -- <u>100분의 60</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수수료) ① (생략)	제6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②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u>응시원서 접수기간에</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u>시험 시행 20일 전까지</u> ----- ----- --
4. <u>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4. <u>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u> ----- ----- ----- -----
5. <u>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u>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시험방법) ①·② (생략)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u>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u>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u><단서 신설></u>	제7조의3(시험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u> -----. <u>다만, 해당 제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u>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2. (생략)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u>철회</u> 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u>철회</u> 하는 경우: 납입한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2. (현행과 같음) 3. ----- -- <u>취소</u> ----- ----- 4. ----- -- <u>취소</u> -----

응시수수료의 <u>100분의 50</u> 5. ~ 7. (생 략)	----- <u>100분의 60</u> 5. ~ 7. (현행과 같음)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 ③ (생략)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일부터 <u>1년</u>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서만 그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④ ----- ----- <u>2년</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 ③ (생략)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u>다음 회의 시험에 한 정하여</u>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u><단서 신설></u>	④ ----- ----- <u>해당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u> -----. <u>다만, 해당 제1차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1차시험 1회를 면제한다.</u>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항공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u>다음 회</u> 의 시험에 <u>한하여</u>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 ----- <u>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u> ----- ----- <u>.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수사 등의 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u>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생략)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u>일간신문·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u>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 ---- <u>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 지</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4992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133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연 락 처	(044) 204-7480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7540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연 락 처	(044) 201-3453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441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인권복지과	
연 락 처	(044) 203-3195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253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연 락 처	(051) 773-5487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3997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 481 - 5183
국세청 소득세과	
연 락 처	(044) 204-3242
소방청 생활안전과	
연 락 처	(044) 205-767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연 락 처	(032) 835-2552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연 락 처	(063) 238-1022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연 락 처	(051) 773-5773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연 락 처	(044) 205-2246